

예 산 총 칙

2018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2,157,237,874	64,717,136
일반회계	1,880,858,237	56,425,747
특별회계	276,379,637	8,291,389
공기업특별회계	202,507,428	6,075,223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01,139,958	3,034,199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01,367,470	3,041,024
기타특별회계	73,872,209	2,216,166
교통사업 특별회계	20,218,834	606,565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697,734	50,932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	3,238,619	97,159
대지보상 특별회계	1,216,000	36,480
기반시설 특별회계	103	3
수질개선 특별회계	18,912,273	567,368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8,521,786	255,654
균형발전특별회계	20,066,860	602,006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사"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2,695,03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55,1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